국민체력 기본법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11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황 희·어기구·한민수

박 정・김준형・정성호

이학영 • 박수현 • 문대림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이 감소한 반면 체중·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력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체력관리는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와 같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있는 국민은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초단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도 예상되고 있는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사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체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필요한 시점임.

이에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의 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력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다.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력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체력인 증 결과에 기초한 운동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체력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그 밖에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체력인증자료의 활용, 자료의 협조요청 및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 12조까지).

국민체력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의 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체력인증"이란 개인의 체력요소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2. "운동처방"이란 체력의 향상과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의 체력수준, 건강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운동의 종류와 실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인 체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꾸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2. 성 · 연령별 체력수준을 고려할 것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력 향상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민체력 향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②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체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민체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민체력 향상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4.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국민체력 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국민체력 향상 지원방안
 - 5. 국민체력 향상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 6. 그 밖에 국민체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및 제3항

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국민체력위원회) ① 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민 체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체력인증 및 운동처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력 향상에 필요한 체육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력인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력인증 기준은 연령 및 성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 결과에 기초하여 운동처방을 할수 있다.
 - ③ 그 밖에 체력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체력인증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체력인증 기관(이하 "체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기관에 대하여 체력인증 업무의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력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체력인증 업무를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체력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체력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 2.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장려에 관한 조사 · 연구사업
- 3. 그 밖에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체력인증자료의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체력인증을 통하여 얻은 체력인증자료(이하 "체력인증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1. 국민체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 2. 국민체력 측정항목 및 측정주기의 평가 및 지침 개발
 - 3. 국민체력 관리 및 지원 사업
 - 4. 지역사회 국민체력 향상 사업
 - 5. 국민체력 관련 제도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체력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체력인증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체력인증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 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력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 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체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력인증을 받은 경우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체력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이 법의 개 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제3호를 삭제한다.